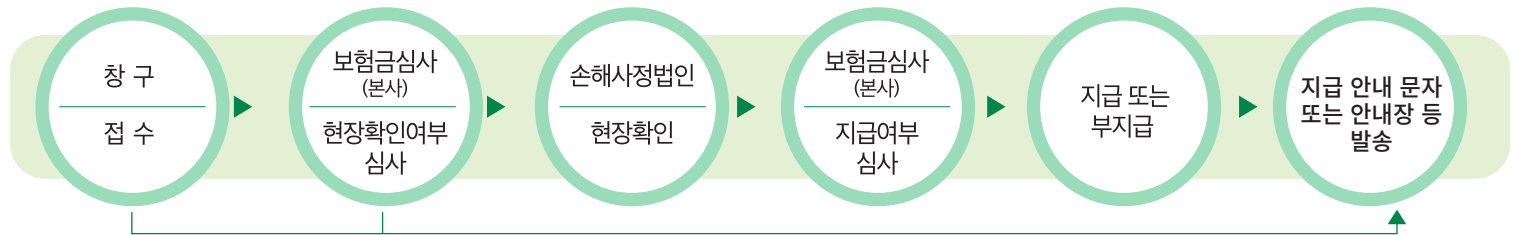


보험금 심사 절차 안내



※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DB생명에 접수되는 경우 LMS 또는 알림톡을 통하여 접수완료 여부를 알려드립니다.

※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보험사는 [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]에 따라 보험사고조사 업무를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및 질병정보 등에 대한 수집/조회 및 이용/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<p>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, 병원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*에게 조사 업무를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제공, 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. *손해사정법인 :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• DB생명에서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DB생명에서 부담합니다. 또한, 고객님의께서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고객님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. ※ 고객님의께서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신 경우 비용 부담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DB생명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을 때 - 정당한 사유 없이 DB생명이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• 고객님의 부담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DB생명이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- DB생명과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
<p>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작성·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. 단,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(보험업감독규정 제9-20조 제4항)
<p>장애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*에서 진단을 요청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. *3차 의료기관 :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
<p>의료심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제 3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재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비용은 DB생명이 부담합니다.
<p>보험금 지급지연 및 가지급제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험금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, 별도 안내를 드리며 약관에 정한 바와 같이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. • 가지급 제도란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보험사고 조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, 청구 보험금 중 조사나 확인이 필요없는 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고객의 요청에 의해 먼저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 ※가지급 보험금은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% 이내로 산정됩니다.
<p>보험기간 치료비 분담지급 등 (비례 분담 적용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해 질병으로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분담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. • 비례분담과 관련하여 귀하가 원하실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청구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대행해 드립니다. 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. • 다른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생명/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
<p>보험금 심사절차 및 지급 결정 안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DB생명 홈페이지(www.idblife.com)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,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•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,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별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.
<p>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. (상법 제662조)
<p>재심사 청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DB생명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DB생명 소비자보호팀으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• 우편접수 : 0619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, 6층(대치동, DB금융센터)
<p>분쟁조정 절차 및 피해구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